

2020회계연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입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287억 6천 5만원으로 기정예산(283억 6천 2백만원) 대비 1.42%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 산		제3회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7,929,855	28,362,206	28,764,982	835,127	402,776	3.0%	1.42%
세외수입	12,847,196	12,847,196	12,847,196	0	0	0.0%	0.00%
경상적세외수입	3,699,507	3,699,507	3,699,507	0	0	0.0%	0.00%
재산임대수입	48,838	48,838	48,838	0	0	0.0%	0.00%
사용료수입	377,644	377,644	377,644	0	0	0.0%	0.00%
사업수입	3,262,691	3,262,691	3,262,691	0	0	0.0%	0.00%
이자수입	10,334	10,334	10,334	0	0	0.0%	0.00%
임시적세외수입	9,147,689	9,147,689	9,147,689	0	0	0.0%	0.00%
기타수입	9,088,857	9,088,857	9,088,857	0	0	0.0%	0.00%
지난년도수입	58,832	58,832	58,832	0	0	0.0%	0.00%
보조금	9,685,404	10,117,755	10,520,531	835,127	402,776	8.6%	3.98%

〈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788,381	3,785,890	4,174,233	385,852	388,343	10.2%	10.3%
서울장학사업 추진	11,491	11,491	11,481	△10	△10	△0.1%	△0.1%
지방세 전출	1,400,083	1,400,083	1,597,584	197,501	197,501	14.1%	14.1%
담배소비세 전출	253,957	253,957	254,074	117	117	0.0%	0.0%
지방교육세 전출	1,824,083	1,824,083	1,824,083	0	179,106	0.0%	9.8%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10,924	10,924	10,924	0	△15	0.0%	△0.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566	2,566	3,040	475	475	18.5%	18.5%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3,163	23,163	30,273	7,110	7,110	30.7%	30.7%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4,162	4,042	4,076	△85	35	△2.0%	0.9%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0	250	500	500	250	순증	100.0%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꿈드림 급식지원)	0	0	292	292	292	순증	순증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8,272	8,365	8,458	186	93	2.3%	1.1%
청소년 건강지원	1,278	1,278	1,259	△19	△19	△1.5%	△1.5%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0	47	112	112	66	순증	141.2%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6,164	6,164	9,576	3,412	3,412	55.4%	55.4%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150	150	130	△20	△20	△13.4%	△13.4%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59	59	29	△30	△30	△50.8%	△50.8%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2,974	12,974	12,954	△20	△20	△0.2%	△0.2%

Ⅱ .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287억 6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283억 6천 2백만원) 보다 4억 2백만원(3.98%)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증감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20년도 제3회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7,929,855	28,362,206	28,764,982	835,127	402,776	3.0%	1.42%
세외수입	12,847,196	12,847,196	12,847,196	0	0	0.0%	0.0%
경상적세외수입	3,699,507	3,699,507	3,699,507	0	0	0.0%	0.0%
재산임대수입	48,838	48,838	48,838	0	0	0.0%	0.0%
사용료수입	377,644	377,644	377,644	0	0	0.0%	0.0%
사업수입	3,262,691	3,262,691	3,262,691	0	0	0.0%	0.0%
이자수입	10,334	10,334	10,334	0	0	0.0%	0.0%
임시적세외수입	9,147,689	9,147,689	9,147,689	0	0	0.0%	0.0%
기타수입	9,088,857	9,088,857	9,088,857	0	0	0.0%	0.0%
지난년도수입	58,832	58,832	58,832	0	0	0.0%	0.0%
보조금	9,685,404	10,117,755	10,520,531	835,127	402,776	8.6%	3.98%
국고보조금등	9,685,404	10,117,755	10,520,531	835,127	402,776	8.6%	3.98%
국고보조금등	9,685,404	10,117,755	10,520,531	835,127	402,776	8.6%	3.98%
지방채	5,300,000	5,300,000	5,300,000	0	0	0.0%	0.0%
국내차입금	5,300,000	5,300,000	5,300,000	0	0	0.0%	0.0%
지방채증권	5,300,000	5,300,000	5,300,000	0	0	0.0%	0.0%

구 분	2020년도 제3회					증감률(%)	
	예 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255	97,255	97,255	0	0	0.0%	0.0%
보전수입등	97,255	97,255	97,255	0	0	0.0%	0.0%
전년도이월금	97,255	97,255	97,255	0	0	0.0%	0.0%

〈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기정예산	추경요구	추경사유 상세
합계			402,776	
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282,800	237,280	국비 내시변경
2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전담상담사 배치)	86,920	17,384	국비 내시변경
3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급식지원)	86,920	147,512	국비 내시변경
4	청소년 건강지원	590,000	△9,000	국비 내시변경
5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46,637	9,600	국비 내시변경

- 평생교육국의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모두 국비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중 1개 사업(청소년 건강지원)은 9백만원을 감액하고, 4개 사업에 4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전년도 9월15일까지 예산안을 서울시로 통보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된 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나, 정부부처는 매년 서울시의 예산확정 후 국비를 변경하여,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조정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의3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세출예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평생교육국은 17개 사업 중 6개 사업에서 1억 1천 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11개 사업에서 3,884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4조 1,742억 3천 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3조 7,858억 9천만원 대비 10.3%(3,883억 4천 3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0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788,381	3,785,890	4,174,233	385,852	388,343	10.2%	10.3%
서울장학사업 추진	11,491	11,491	11,481	△10	△10	△0.1%	△0.1%
지방세 전출	1,400,083	1,400,083	1,597,584	197,501	197,501	14.1%	14.1%
담배소비세 전출	253,957	253,957	254,074	117	117	0.0%	0.0%
지방교육세 전출	1,824,083	1,824,083	1,824,083	0	179,106	0.0%	9.8%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10,924	10,924	10,924	0	△15	0.0%	△0.1%

세부사업별	2020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566	2,566	3,040	475	475	18.5%	18.5%
사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3,163	23,163	30,273	7,110	7,110	30.7%	30.7%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4,162	4,042	4,076	△85	35	△2.0%	0.9%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0	250	500	500	250	순증	100.0%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꿈드림 급식지원)	0	0	292	292	292	순증	순증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8,272	8,365	8,458	186	93	2.3%	1.1%
청소년 건강지원	1,278	1,278	1,259	△19	△19	△1.5%	△1.5%
청소년복지시설 기능강화사업 지원	0	47	112	112	66	순증	141.2%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6,164	6,164	9,576	3,412	3,412	55.4%	55.4%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150	150	130	△20	△20	△13.4%	△13.4%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59	59	29	△30	△30	△50.8%	△50.8%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2,974	12,974	12,954	△20	△20	△0.2%	△0.2%

〈 2020회계연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회계별 추가경정예산 개요 〉

(단위:백만원,%)

	당초예산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총 계	3,788,381	3,785,890	4,174,233	388,343	10.3%
일반회계	3,758,092	3,755,601	4,140,532	384,931	10.2%
행정운영경비	305	305	305	-	-
사업비	3,757,787	3,755,296	4,140,227	384,931	10.3%
균형발전특별회계	16,467	16,467	19,879	3,412	20.7%
사업비	16,467	16,467	19,879	3,412	20.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3,822	13,822	13,822	-	-
사업비	13,822	13,822	13,822	-	-

가. 장학사업 추진 및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 서울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외출장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출연금 중 국외업무여비를 각각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 서울장학재단은 기정예산 114억 9천1백만원에서 0.1%(1천만원) 감액한 114억 8천1백만원으로
 - 평생교육진흥원은 기정예산 109억3,968만원에서 0.1%(1천5백만원) 감액한 109억2,435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음.

〈 “장학사업 추진”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11,491,308	11,481,308	△10,000	△0.1%
출연금	11,491,308	11,481,308	△10,000	△0.1%

〈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10,939,687	10,924,354	△15,333	△0.1%
출연금	10,939,687	10,924,354	△15,333	△0.1%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접촉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액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2020회계년도 제2회 추경시 서울시(기획조정실)는 법정전출금, 부담금 등을 제외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조정을 추진하였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경우 일괄 삭감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뒤늦은 감액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서울시 시책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나. 법정전출금(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출

- 금번 법정전출금은 2019년도 시세 정산분(결산차액)을 반영한 것으로
 - 지방세는 기정예산(1조4천억8천3백만원) 대비 14.1%(1,975억120만원) 증액하고,
 -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2,540억7,425만원) 대비 10.9%(1,791억619만원)를 증액하며,
 - 지방교육세는 기정예산(1조 6,449억7,700만원) 대비 0.05%(1억1,720만원) 증액하여, 총 3,767억 2,460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출”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소계	3,299,017,050	3,675,741,654	376,724,604	11.4%
지방세	1,400,083,000	1,597,584,201	197,501,201	14.1%
담배소비세	253,957,050	254,074,258	117,208	0.05%
지방교육세	1,644,977,000	1,824,083,195	179,106,195	10.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법정전출금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2019회계연도 결산차액을 금번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정산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조례는 전출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다음연도(차차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전체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있는바,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 비교

서울시의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은 일치해야 하나, 358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부한 ‘균특회계 시도전환 사업 보전분(358억 6천 7백만원)’ 이 포함된 것으로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의 법정전출금과 같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 비교 〉

(단위:천원)

	소계	지방세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전입금)
서울시 법정전출금	376,724,604	197,501,201	117,208	179,106,195
교육청 법정이전수입	412,591,604	233,368,201	117,208	179,106,195
※ 서울시교육청의 시도세전입금 : 233,368,201 · 2019회계연도 시도세전입금 정산분 : 197,501,201천원 · 균특회계 시도전환 사업보전분(교육부) : 35,867,000천원				

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조정

-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17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매칭예산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1개 사업 (청소년건강지원 사업)은 1천 9백만원을 감액하고, 6개 사업은 12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9천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매칭 반영 사업 내역〉
(단위: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소계	12,679,285	13,870,576	1,191,291	8.3%
	국비	5,013,151	5,415,927	402,776	7.6%
	시	7,666,134	8,454,649	788,515	8.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소계	2,565,600	3,040,160	474,560	18.5%
	국비	1,282,800	1,520,080	237,280	18.5%
	시	1,282,800	1,520,080	237,280	18.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소계	173,822	208,590	34,768	20.0%
	국비	86,920	104,304	17,384	20.0%
	시	86,902	104,286	17,384	20.0%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소계	250,000	500,000	250,000	100.0%
	국비	250,000	250,000	0	0.0%
	시	-	250,000	250,000	순증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푸드림 급식지원)	소계	-	291,912	291,912	순증
	국비	-	147,512	147,512	순증
	시	-	144,400	144,400	순증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소계	8,365,226	8,458,440	93,214	1.1%
	국비	2,756,794	2,756,794	0	0.0%
	시	5,608,432	5,701,646	93,214	1.7%
청소년 건강지원	소계	1,278,000	1,259,000	△19,000	△1.5%
	국비	590,000	581,000	△9,000	△1.5%
	시	688,000	678,000	△10,000	△1.5%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소계	112,474	46,637	65,837	141.2%
	국비	56,237	46,637	9,600	20.6%
	시	56,237	0	56,237	순증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상담전문가를 배치하여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기정예산(25억6,560만원) 대비 18.5%(4억7,456만원) 증액한 30억 4,016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x1,282,800)	(x1,520,080)	(x237,280)	18.5%
	2,565,600	3,040,160	474,560	18.5%
민간위탁금	(x1,282,800)	(x1,386,610)	(x103,810)	8.1%
	2,565,600	2,773,220	207,620	8.1%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x-)	(x133,470)	(x133,470)	순증
	0	266,940	266,940	순증

‘민간위탁금’은 7개 자치구(관악, 금천, 동작, 서대문, 서초, 양천, 영등포)에 전일제 동반자 각 1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기정예산(25억 6,560만원) 대비 8.1%(2억 7백만원) 증액한 27억 7,322만원으로 조정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고위기청소년 전담 동반자 9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6,94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를 1명 추가(5명 → 6명)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40억 3700만원에서 0.9%(3,476만원)을 증액하여 40억 7천 2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x86,920)	(x104,304)	(x17,384)	20.0%
	4,041,503	4,076,271	34,768	0.9%
민간위탁금	(x86,920)	(x104,304)	(x17,384)	20.0%
	4,037,503	4,072,271	34,768	0.9%
민간위탁사업비	(x-)	(x-)	(x-)	-
	4,000	4,000	0	0.0%

-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은 고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4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시,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과 청소년안전망팀을 구성(3개 자치구,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하려는 것이며,

2020년 5월 간주처리된 국비에 맞춰 시비를 편성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국비, 2억 5천만원) 대비 100%(시비,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려는 것임.

〈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x250,000)	(x250,000)	(x-)	0.0%
	250,000	500,000	250,000	100.0%
민간위탁금	(x25,000)	(x25,000)	(x-)	0.0%
	25,000	50,000	25,000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25,000)	(x225,000)	(x-)	0.0%
	225,000	450,000	225,000	100.0%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급식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비지원(1억 4,750만원) 변경에 따라 시비(1억 4,440만원)를 편성하여 총 2억 9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급식지원)”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x-)	(x147,512)	(x147,512)	순증
	0	291,912	291,912	순증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x147,512)	(x147,512)	순증
	0	291,912	291,912	순증

-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은 신규 개소한 민간쉼터 1개소(관악들꽃 청소년자립지원관, 비합숙시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추가 내시(2020년 5월 간추거리)에 맞춰 시비를 18.0%(9천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x2,756,794)	(x2,756,794)	(x-)	0.0%
	8,365,226	8,458,440	93,214	1.1%
민간위탁금	(x2,120,562)	(x2,120,562)	(x-)	0.0%
	7,516,294	7,516,294	0	0.0%
사회복지사업보조	(x305,914)	(x305,914)	(x-)	0.0%
	518,614	611,828	93,214	18.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330,318)	(x330,318)	(x-)	0.0%
	330,318	330,318	0	0.0%

-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지원(바우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시비를 감액 조정한 것으로 기정예산(12억 7천8백만원) 대비 1.5%(1천9백만원) 감액한 12억 5천 9백만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x590,000)	(x581,000)	(x△9,000)	△1.5%
	1,278,000	1,259,000	△19,000	△1.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590,000)	(x581,000)	(x△9,000)	△1.5%
	1,278,000	1,259,000	△19,000	△1.5%

-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청소년쉼터 8개소의 시설 기능보강(시설 개보수 및 장비, 기자재 교체, 사무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민간위탁금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4,664만원) 대비 141.2%(6,584만원)을 증액한 1억 1천 2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x46,637)	(x56,237)	(x9,600)	20.6%
	46,637	112,474	65,837	141.2%
민간위탁금	(x46,637)	(x56,237)	(x9,600)	20.6%
	46,637	112,474	65,837	141.2%

-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반영 사업은 모두 청소년 대상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국고보조금 조기 확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시비 매칭 비율의 적정성 검토 및 적기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 본 사업은 시립청소년센터 등의 위탁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 권고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231억 6천 3백만원에서 71억 1천만원 (30.7%)을 증액한 295억 6천 2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23,162,559	30,272,821	7110262	30.7%
사무관리비	95,000	95,000	0	0.0%
공공운영비	307,716	307,716	0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	4,800	0	0.0%
기타보상금	70,000	70,000	0	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0,000	100,000	0	0.0%
민간위탁금	22,452,043	29,562,305	7,110,262	31.7%
민간위탁사업비	133,000	133,000	0	0.0%

- 평생교육국은 기 편성된 민간위탁금 전액을 전출하였으나, 2월 중순부터 휴관한 청소년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전액을 소진하였고, 3월부터 5월까지 청소년센터 21개소 및 유스호스텔의 누적 적자액은 총 95억원 규모로 취합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인건비를 70%로 수준으로, 운영비는 100% 지원하기 위하여 71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청소년센터의 지역 사회 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청소년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관권고로 인한 손실금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청소년센터 및 유스호스텔 지원 산출내역(3개월, 3~5월) 〉

(단위:백만원)

구분		시립청소년시설 (유스호스텔, 센터)				조정액 (인건비70%)
		합계	3월	4월	5월	
계		9,503	3,682	2,697	3,123	7,110
소계	인건비	7,975	3,056	2,365	2,554	5,582
	운영비	1,528	626	332	570	1,528
서울유스호스텔	인건비	375	114	113	148	263
	운영비	42	27	8	8	42
청소년센터(21개소)	인건비	7,599	2,942	2,252	2,406	5,319
	운영비	1,486	600	325	562	1,486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의 휴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3월에서 5월까지의 손실금만을 증액편성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손실금 지원(7개월분 162억 6천 7백만원으로 추계, 6~12월)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6월 이후 청소년센터 및 유스호스텔 지원 추계 내역(7개월, 6월~12월) 〉

(단위:백만원)

구분		시립청소년시설 (유스호스텔, 센터)								조정액 (인건비70%)
		합계	6월	7월	8월	9월	10	11월	12월	
계		21,955	3,110	3,432	2,888	3,196	3,411	2,890	3,028	16,267
소계	인건비	18,958	2,689	2,969	2,469	2,803	2,938	2,496	2,593	13,271
	운영비	2,996	421	463	419	393	473	394	435	2,996
서울유스호스텔	인건비	1,830	353	290	223	292	223	225	223	1,281
	운영비	390	53	54	59	51	60	51	61	390
청소년센터(21개소)	인건비	17,128	2,337	2,680	2,246	2,510	2,715	2,271	2,370	11,990
	운영비	2,607	367	409	360	342	412	343	373	2,607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손실금으로 한정하여 편성되었으나, 그 동안 평생교육국은 센터운영비의 일부만을 지원하여 청소년센터가 수익성 사업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재정지원 외에도 청소년센터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운영뿐만 아니라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의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청소년센터의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평생교육국과 수탁법인에게 요구된다고 하겠음.

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

- 본 사업은 자치구의 문화의집 건립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4개 자치구(도봉, 서대문, 강동, 동작, 성북)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북구(월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61억 6천 4백만원) 대비 55.4%(34억 1천 2백만원) 증액한 95억 7천 6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6,164,000	9,576,000	3,412,000	55.4%
자치단체자본보조	6,164,000	9,576,000	3,412,000	55.4%

〈 성북구(월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지원(신규) 개요〉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10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463m²
- 사업기간 : 2019.10 ~ 2021.6
- 총사업비 : 3,950백만원(시비 3,412백만원, 구비 538백만원)

※ 성북구(월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을 성북구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성북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성북구의회는 금번 정례회(2020.6.5.~6.26.)에서 심의할 예정에 있음.

- 평생교육국은 성북구(월곡)의 청소년 문화의집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결과 D등급, 붕괴위험으로 건물을 폐쇄한 상황으로, 청소년과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본 문화의집은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되는바, 근본적인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축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 등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성북(월곡) 청소년문화의 집은 이미 건물을 폐쇄하였다는 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계획수립 및 기본설계가 2016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는 점, 금년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본 사업의 추진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련 사업의 조정(홍보·소통·교육 등)

- 평생교육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련 집합교육, 유관기관과의 소통(워크숍, 간담회 등), 토론회 등을 축소하고자,
 -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은 기정예산(1억 5천만원) 대비 3.4%(2천만원) 감액한 1억 3천만원으로,
 -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는 기정예산(5천 9백만원) 대비 50.8%(3천만원) 감액한 2천 9백만원으로,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은 기정예산(129억 7천 3백만원) 대비 0.2%(2천만원) 감액한 129억 5천 3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개 사업에서 7천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련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149,600	129,600	△20,000	△13.4%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59,000	29,000	△30,000	△50.8%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2,973,511	12,953,511	△20,000	△0.2%

-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 〈학부모 안심식재료 모니터링단 운영〉은 기정예산 1천5백만원 중 5백만원(25.0%)를 감액하여 1천 5백만원으로,
 - 〈급식관계자 전문역량교육 및 체험교육〉은 기정예산 3천만원 중 1천만원(33.3%)을 감액한 2천만원으로,
 - 〈식생활교육 학부모강사 양성〉은 기정예산 2천 5백만원 중 5백만원(19.2%)를 감액하여 2천만원으로 감액하려는 것임.

〈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149,600	129,600	△20,000	△13.4%
사무관리비	149,600	129,600	△20,000	△13.4%
학부모 안심식재료 모니터링단 운영	20,000	15,000	△5,000	△25.0%
급식관계자 전문역량 교육 및 체험교육	30,000	20,000	△10,000	△33.3%
친환경 식생활교육 콘텐츠 연구운영 및 개발	16,000	16,000	-	-
식생활 교육 학부모강사 양성	26,000	21,000	△5,000	△19.2%
찾아가는 서울시 식생활 교육	32,000	32,000	-	-

-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책토론회 축소 및 공동생산자 대회 취소를 위해 ‘사무관리비’ 중

〈학교급식 관계자 청책토론회〉는 기정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50.0%)을 감액한 1천만원으로,

〈친환경급식 공동생산자 대회〉는 기정예산을 전액 감액하려는 것임.

〈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59,000	29,000	△30,000	△50.8%
사무관리비	51,000	21,000	△30,000	△58.8%
학교급식 관계자 청책토론회	20,000	10,000	△10,000	50.0%
친환경급식 공동생산자 대회	20,000	-	△20,000	100%
홍보대사 운영	11,000	11,000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8,000	-	-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위원회, 워크숍 등의 운영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공공급식위원회 운영〉은 기정예산 2천1백만원 중 8백만원(38.1%)를 감액하여 1천3백만원으로,

〈식단분석〉은 기정예산 2백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이구동감 소통교육〉은 기정예산 1천만원을 전액 감액하려는 것임.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12,973,511	12,953,511	△20,000	△0.2%
사무관리비	89,000	69,000	△20,000	△22.5%
공공급식위원회 운영	21,000	13,000	△8,000	△38.1%
산지선정위원회	3,000	3,000	-	-
생산자 간담회	3,000	3,000	-	-
식단분석	2,000	-	△2,000	△100%
이구동감 소통교육	10,000	-	△10,000	△100%
홍보업무 추진	50,000	50,000	-	-
공공운영비	237,790	237,790	-	-
전산개발비	107,700	107,700	-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839,021	10,839,021	-	-
자치단체자본보조	1,700,000	1,700,000	-	-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련 감액 조정하려는 3개의 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부수적 사업의 일부를 축소’하려는 것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덕으로 인식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감액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대했던 성과를 감액된 사업비로만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부수적 사업의 추진이 주 사업(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목적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규모가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인지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